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포함〉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26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8. 1.
- (3) 회 부 일 : 2025. 8.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는 당직의료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나, 당직인력으로는 대체하지 못해 당직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 간호사 1인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당직의료인)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당직의료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다. 다만, <u>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여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41조¹⁾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면서, 그 수와 배치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²⁾에서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등을 제외한 각종 병원의 당직의료인 기준을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의사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300명당 1명으로 다른 각종 병원보다 기준을 완화하면서, 간호사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80명당 1명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

1)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 2016.12.20. 개정 이전 「의료법」에서는 각종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며, 별도의 법률 위임 없이 당시 「의료법 시행령」에서 당직의료인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은 요양병원과 그 외 각종병원이 다르지 않았음.³⁾
- 2016.12.20. 「의료법」 개정(2017.6.21. 시행)으로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현행과 같음),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의 당직의료인 기준 규정은 삭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당직의료인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음.
-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의 당직의료인 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였음. 당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에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시행규칙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의 배치기준 완화 의견 및 급성기 대비 노인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직의사의 배치기준은 완화하고 당직간호사의 배치기준은 세분화한 것으로 보임.

3)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44호, 2017. 3. 20., 일부개정] (2017.6.20. 개정 이전의 시행령)
제18조(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 병원 종류 및 입원환자 수에 따른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병원(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등 제외)	- 입원환자 200명까지 1명 -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1명 추가	- 입원환자 200명까지 2명 -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2명 추가
요양병원	- 입원환자 300명까지 1명 -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 추가	- 입원환자 80명까지 1명 -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 추가
정신병원 등	입원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원 자체 기준	

□ 그 결과, 요양병원의 당직간호사 배치기준이 그 외 각종 병원보다
높게 설정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었음.

< 각종 병원 및 요양병원의 당직간호사 배치 기준 비교 >

입원환자	각종 병원(A)	요양병원(B)	B-A	요양병원수
1~80명	2명	1명	-1	81
81~160명	2명	2명	0	435
160~200명	2명	3명	+1	373
201~240명	4명	3명	-1	140
241~320명	4명	4명	0	218
321~400명	4명	5명	+1	43
401~480명	6명	6명	0	19
481~560명	6명	7명	+1	13
561~600명	6명	8명	+2	5
601~640명	8명	8명	0	0
641~720명	8명	9명	+1	3

□ 또한 2014년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의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⁴⁾에 따라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도 당직업무에 투입하고 있었으나, 2016년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간호조무사는 당직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⁵⁾을 내리면서 요양병원들은 당직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⁶⁾

□ 또한 현행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이 의무사항이며,⁷⁾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중 필수요건인 당직의료인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을 받지 못함.

- 참고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2010년 당시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던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면서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되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양병원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였음.⁸⁾

4) 보건복지부 시행공문(보건의료정책과-2656호(201.6.25.))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알림」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해서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4194(2015.10.26.) 회답: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6) 의학신문, “요양병원 당직 간호사 확보 ‘발등의 불’”, 2017.7.13.

7) 「의료법」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등급 판정 결과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 등급을 받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칙 및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병원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에 통보함으로써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⁹⁾

□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간호조무사도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¹⁰⁾ 및 [별표 5]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현행법이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규 진료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다른 병원에 비하여 당직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807495,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9) 현행법 제90조는 제41조(당직의료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의사를 적게 두도록 하는 대신, 당직간호사를 병동마다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는바, 이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¹¹⁾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요양병원에 상주하는 의료인의 수가 적어 당직간호사의 책임범위가 보다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간호사 1인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더라도, 해당 간호사는 함께 배치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까지 담당 하게 됨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

11)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당직의료인 제도는 야간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적합한 대처를 위한 것으로 배치기준 개정 시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호사를 보조하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진료보조 등이 가능하므로 독립적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비중이 높아져 노인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야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울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대한의사협회 (신중 검토)

-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으로, 간호사와 교육과 임상실습 과정 등이 달라 당직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응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
 -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 포함할 경우 응급대처·기본심폐소생술(BLS)·약물안전관리 등 필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당직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 과정이 정비가 되어야 할 것임.
-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므로 응급상황 대처와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수적인바, 다년간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당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대한간호협회 (반대)

-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보조적으로만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허용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며, 응급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요양병원은 고령·중증 환자 비중이 높아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전문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당직의료인에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확보 측면에서 부적절함.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찬성)

- 다수의 요양병원에서 야간, 휴일 당직간호사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직 공백이 발생하거나 대체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하여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당직의료인에 간호사 1인 이상을 전제로 간호조무사가 보조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도 부합하는 한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임.

5) 대한병원협회 (찬성)

- 요양병원은 현행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에 따라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에도 대체가 가능한 점 등 요양병원의 환자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찬성함.

6) 대한요양병원협회 (찬성)

□ 요양병원의 불합리한 당직의료인(간호사) 규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당초 요양병원의 경우 당직의료인 간호인력 중 2/3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한간호협회의 민원에 따른 법제처의 법령해석(법령해석총괄과-358(2016.2.5.))으로 2016년 7월부터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당직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현재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응급상황이 적음에도 당직 간호사를 더 배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자원 낭비 및 주간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함.
-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에 없는 행정당직도 배치할 의무가 있어 안전장치가 추가되어 있으며, 당직의료인은 의무인증의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음.

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반대)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할 수 없음. 또한 당직의료인의 취지는 응급상황에 대처 가능한 최소한의 의료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 판단 및 역할이 제한적인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해서는 안됨.

8)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반대)

- ☐ 즉각적인 판단과 처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에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경우 환자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

1. 질의요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요양병원에 한하여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간호사는 입원환자 200명까지 2명을 두되,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2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병원(「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는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2. 회답

요양병원(「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의료법」 제41조에서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36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간호사 1명을 두되,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는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으며,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요양병원(「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는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각급 병원의 입원환자 수에 따라 일정 인원의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5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수를 고려한 의료인의 적정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규정은 서로 상이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의 수를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각종 병원에 입원환자의 수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한 취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야간·공휴일 등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입원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원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인원 수는 그러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할 것입니다(1994. 8. 3. 대통령령 제14354호로 일부개정·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입원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2항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제1호)와 진료보조 업무(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함)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80조의2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간호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가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나목),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

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다목),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라목) 등의 업무를 임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등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정 「의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보조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 제80조제2항에서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의료법」 제80조의3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인 제41조는 명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당직의료인으로서의 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